

## O-1 비자와 P-1 비자

비이민 취업 비자 중,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TV 산업 등의 영역에서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과 업적을 가진 개인이 지원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흔히 취업비자로 사용되는 H1B 비자가 매년 정해진 쿼터가 있고, 최소임금이 있으며, 비자승인 기준이 4 년제 학사로 취업제안을 받은 직책이 학사 전공과 맞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는 반면, O-1 비자는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대회나 경기에서 개인의 특출한 능력을 인정받은 증거가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단기 취업비자로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O-1 비자는 미국내의 고용주로부터 취업제안을 받은 후, 비자 스폰서쉽 역시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O-1 비자 지원자가 개인의 재능을 사용, 정해진 행사나 고용기간동안 취업활동을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O-1 비자는 처음 신청시 최장 3 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그 후 1 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O-1 비자 지원자의 비자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영역에서 국가적,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자, 해당 영역의 협회 회원으로서 그 영역의 전문가들로부터 업적을 인정받은 자, 해당 영역의 업적이 언론에 보도된 자, 해당영역 또는 관련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업적에 대해 심사한 적이 있는 자, 해당 영역에 대한 논문이 전문 잡지에 출간된 자, 과학을 포함, 학술이나 비즈니스에서 큰 공헌을 한 자, 해당 영역 관련 권위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 등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등입니다.

O-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영역의 특출한 능력을 증명하는 관련 기관의 추천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추천서의 의견은 특기자가 정말로 특출한 능력을 가진 자인지, 또 미국내에서는 그 일이 더욱 특별한 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또한 고용주와 고용인의 계약관계의 증명과 계약기간동안 고용인이 수행할 임무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출한 능력을 가진 개인 본인은 O-1 비자를 받으며, 그의 수행원은 O-2 비자를, 특기자와 수행원의 가족은 O-3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O-3 비자는 미국 내 체류는 가능하는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O-1 비자 지원을 하는 많은 경우는 예체능 특기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권도를 하여 다수의 상장을 받고, 태권도 공식권위기관인 국기원 등에서 공인 단증과 상장 등을 받은 경우, O-1 비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O-1 비자와 비슷한 비자로는 P-1 비자가 있습니다. P-1 비자는 O-1 비자의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P-1 비자는 “국제적인 인정(Internationally Recognized)”을 받은 운동선수 개인, 팀 또는 연예인 등이 지원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P-1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운동선수 개인/팀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만큼의 높은 업적을 이루어 관련 활동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P-1 비자 고용주는 고용인과의 계약관계 증명과 함께 계약기간동안 고용인이 정해진 행사나 공연 등의 일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개인/팀의 국제적인 인정을 증명하는 추천서 등이 필요합니다.

P-1 운동선수의 비자 지원 자격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개인선수/팀 이어야 하는 이는 미국 메이저 리그나 이에 비슷한 국제적 명성을 가진 팀과의 계약이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동안 참가할 경기의 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메이저 리그에 전에 참여했거나, 국가대표로서 국제경기에 참여, 대학리그에 참여, 미국 스포츠 심사위원으로부터 받은 편지, 전문가나 언론의 편지, 비자지원하는 운동선수의 랭킹, 그 외 수상 경력등의 있으면 좋습니다.

P-1 연예인 그룹의 비자 지원 자격은 지속적인 국제적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최소 1년 이상의 공연을 한 기록, 국제적 인정을 받은 수상 또는 후보에 오른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알려진 공연의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언론보도, 흥행한 기록, 추천장,

높은 월급을 받을 것이라는 증거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75%의 그룹의 멤버들이 1 년동안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저희 로펌은 스포츠, 예술, 과학 등의 재능으로 O-1 비자와 P-1 비자를 승인받은 다수의 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인의 특출한 능력 또는 수상경력으로 O-1 비자 및 P-1 비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문로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서 변호사 사무실

(617)877-3435

웹사이트: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http://www.suhladyer.com)